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432
------	------

2018년 4월 9일  
기획경제위원회

##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8년 3월 26일

다. 상정결과 :

### 【서울특별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8. 4. 9)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 II .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김용복)

- 한시기구 정비를 통해 시정운영 핵심과제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기관별 신설사무를 규정함으로써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해 주요 시정운영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지하안전관리업무를 안전총괄본부에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 나.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안 부칙 제2조)

- 서울시(이하 “시”)시는 지난 2016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 등 2개의 한시기구를 당초 1년의 기한으로 신설해 운영해 왔으며,<sup>1)</sup> 이후 2017년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결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그 동안 ‘지역발전본부’는 4대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효과적인 추진과 전략산업과 공간계획을 연계한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균형발전정책 총괄 조정 역할을, ‘문화시설추진단’은 각종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시설 건립 등을 전담 하는 등 당초 설치목적에 따른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음(참고 자료 1).

1) 최초 존속기한 : 지역발전본부('16. 7. 1 ~ '17. 6. 30), 문화시설추진단('16. 8. 19 ~ '17. 8. 18)

## 〈한시기구 현황〉

지역발전본부(1본부 4과, 85명)	문화시설추진단(1단 2과, 49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50px; margin: 0 auto;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지역발전본부 (3급)</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100px;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00px;">동남권 사업단</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100px;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00px;">동북권 사업단</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100px;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00px;">서남권 사업과</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100px;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00px;">서북권 사업과</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50px; margin: 0 auto;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문화시설추진단 (3급)</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100px;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00px;">문화 시설 과</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100px;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00px;">박 물 관 과</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한전 부지 사전협상 추진</li> <li>○ 창동상계 활성화 계획 수립, 서울아레나 건립, 플랫폼 창동 61 조성</li> <li>○ 마곡산업단지 기업 투자유치 및 공공 산업 지원시설 건립·운영</li> <li>○ 수색역세권 일대 활성화 추진, 세종대로 역사문화 특화 공간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 및 문화시설 건립 총괄</li> <li>○ 신설 박물관 등 전시 및 운영계획 수립</li> <li>○ 박물관 유물·전시물 수집 및 기증·기탁 활성화</li> <li>○ 자치구 문화시설 건립 및 지원</li> </ul>

○ 이미 한 차례 기한 연장을 한 후 당초 협의에 따라 올 6월과 8월에 각각 존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시는 각 권역별 경제 중심지 조성 과 문화시설 건립 확대 등을 추진할 전담조직 필요성을 이유로 2개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해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음<sup>2)</sup>.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sup>3)</sup>는

2) 시는 행정안전부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3년 연장을 요청했으며, 행정안전부는 3월 15일 1년의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을 승인하였음.

3)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결국,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긴급한 행정수요 발생 여부와 업무의 중요성 및 업무량, 해당 사업의 종료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할 것임.
- 시가 존속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2개 한시기구의 경우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나 업무추진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미 포화 상태에 있는 3급 이상 기구 현황을 비롯한 현행 조직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적 시각이 우선해 제기될 수 있음.
- 실제 현재 시에는 58개 3급 이상 기구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제협력관을 비롯한 6개 기구는 법적 근거가 없이 시장 방침으로 설치되어 운영중인 불법적인 임시기구임.

---

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 행정안전부가 조직운영 상황이나 업무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가 요청한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연장을 승인했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만료된 후 행정안전부가 기한연장을 추가적으로 승인하지 않을 경우 2019년 이후 불법기구 수가 현재보다 확대될 우려가 있음.

### 〈임시기구 현황〉

연번	기구명	설치근거	업무내용
1	국제협력관	시장방침(2013. 12. 2)	·국제교류분야 총괄·조정
2	복지기획관	시장방침(2014. 7. 4)	·복지정책, 자활지원 등 총괄
3	보행친화기획관	시장방침(2010. 8.16)	·자전거, 교통운영 등 총괄
4	대기기획관	시장방침(2011. 11. 29)	·기후, 환경, 에너지관련 업무 총괄
5	재생정책기획관	시장방침(2012. 9. 28)	·도시계획 및 개발업무 총괄
6	주거사업기획관	시장방침(2011. 11. 29)	·재정비, 주거환경관련 업무 총괄

-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불법기구의 운영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인 시각으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함.
- 한시기구가 추진하는 각종 주요 시정사업의 긴급성이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시는 조직 효율화를 통한 기구 운영의 합법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함.

#### 다. 신규사무(지하안전관리 업무) 소관기관 지정(안 제15조제8호 신설)

- 도심지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싱크홀)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인적·물적 손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증가함.
-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월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과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포함한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관리,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이행·시정명령, 지반침하사고 조사,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
- 시는 안전총괄본부를 관련법 제정·시행에 따라 새롭게 부여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사무를 수행할 소관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함.
- 현재 시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하개발과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와 관련한 각종의 업무를 정보기획관, 안전총괄본부, 주택건축국, 물순환안전국 등에서 분담해 시행하고 있는 상황임.

## 〈지하개발 또는 시설물 관련 업무 분장사항〉

실·국	부 서	분 장 사 항
정 보 기 획 관	공간정보담당관	- 지하시설물 데이터 정확도 개선 및 유관기관 협조 지하시설물 및 지반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안 전 총 괄 본 부	시 설 안 전 과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보 도 환 경 개 선 과	- 지하도상가 관리
	도 로 계 획 과	- 지하공간개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업무
	도 로 관 리 과	- 도로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굴착복구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주 택 건 축 국	건 축 기 획 과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물 순 환 안 전 국	물 순 환 정 책 과	-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 지하수 수질 오염방지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 지하수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현재까지 시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총괄부서가 없으나, 공사장 및 도로 지반 침하에 관한 대책인 ‘서울시 도로함몰 특별 관리대책’ 발표, 도로함몰 예방시스템 구축,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동공탐사 용역 시행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업무를 안전총괄본부(도로관리과)가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하안전관리 업무의 소관부서로 지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지하안전관리업무의 소관기관 지정과 별도로 현재 각 실·국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지하개발이나 지하시설물 관련 업무와의 효과적인 연계성 강화 방안 마련이 요구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호를 같은 조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1조제1항의 지역발전본부의 존속기한은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9년 8월 18일까지로 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생 략) <u>〈신 설〉</u> 8. (생 략)	제15조(안전총괄본부) ----- -----. 1.~7. (현행과 같음) 8. <u>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 9. (현행 제8호와 같음)